

지역사회협력센터 운영 규정

제 정 : 2017. 11. 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지역사회협력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금강대학교 지역사회협력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센터는 본 대학 내에 둔다.

제4조(운영 목적) 지역사회교류발전에 공헌하는 대학의 사업을 지원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소장) 본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직원) 본 센터에는 산학협력교수, 사무직원 및 행정조교, 근로장학생을 둘 수 있으며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규정에 의한다.

제7조(사업)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①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 분석
- ②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지원 및 관리
- ③ 환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의 개선·보완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-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본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본 위원회는 본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 1. 기본 계획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 2. 본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3. 본 센터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4. 자문위원회 등 업무와 관련된 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5. 필요 인력에 관한 추천사항
- ⑤ 학생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(자문위원회) ① 센터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.

②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
③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감사) 본 센터의 감사는 본 대학교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 및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